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0월 2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17.)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의결

(원안가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대개 민간 부문에서의 영역인 반면, 우편사업은 「우편법」에 따라 국가가 경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편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 볼 필요가 있음.
-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면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국가기관이 아닌 조합의 근거법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적용 배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국가의 우편 역무를 수행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상운송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소위원장 : 김현위원)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의결함.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쳐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u> <u>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u>